

구미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사항과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훼손” 용어 추가(안 제4조)
- 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안 제11조)
-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의거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삭제
- 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변경(안 제18조)
- 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거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변경(안 제18조)
- 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 및 구성, 기능, 임기, 직무, 회의, 시책반영, 위원수당 등 조항 추가(안 제20조~제27조)
- 사. 「구미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정보공개심의회”로 변경(안 제28조)
- 아.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에 따라 “환경조사 결과 공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의거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문구 삭제(안 제30조)
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육진흥법」, 「지방재정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구미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구미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T/F팀, 청렴정책팀과 합의

라. 기 타 : 해당없음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환경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의 우리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 중 환경과 관련된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 및 과학적 예견성
2. 자연생태계에의 배려
3. 환경오염 부하량 감소
4.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의 참여 협동
6. 지구환경에의 배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 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

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환경 보전행위를 말한다.

제5조(환경문화의 창출) 시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 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학교, 언론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

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0조(기본시책) 시장은 제2조에 규정한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해방지,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 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양호한 자연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및 재정 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보전계획)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행정의 기본 지침이 되는 구미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및 사업은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보전 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도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 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하수처리 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
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①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환경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의 날 행사 추진 사업
2. 환경문화 활성화 및 환경문화 예술보급 추진에 관한 사업
3.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4. 환경감시활동 등 환경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5.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6.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사업
7. 환경관련 사업장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사업
8.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민간단체에 대하여 환경상을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환경상 시상 및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역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환경정책위원회

제20조(환경정책위원회 등 설치)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민간단체 등 전문가를 위촉,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구성) ①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구미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환경정책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안전과장이 된다.

④ 환경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기능) 환경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선출직 및 소속단체의 직을 상실한 경우
2. 타 부서로의 이동 및 전출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시책반영) 시장은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수당 등) 환경정책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제28조(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미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되도록 인제의 육성, 홍보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행정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노력함과 동시에 환경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환경백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필요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내용과 추진상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5장 환경협력

제32조(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를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
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
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
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
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
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
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
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신설 2012.2.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
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
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
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
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
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

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중기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7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 제1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도 환경계획 및 제19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군·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개발 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및 시·군·구 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綠地帶), 폐수·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피해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이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이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상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구미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08.21)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개정 2009.08.21)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개정 2009.08.21)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9.08.21)

□ 구미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소관 실·과·소		환경안전과
입 안 자	과 장	문 경 원
	담 당	김 중 부
	담 당 자	김 정 미 (480-5252)